

의정정보 2012-3호

1. 최근 제·개정 법령	3
2. 최근 타 시도 제·개정 조례	22
3. 최근 중앙정부의 지방관련 동향	58
4. 선거관련 정보	82
5. 행복한 책읽기	92

모두 보기

최근 제·개정 법령

-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5)
- 정치자금법(6)
- 정당법(8)
- 공직선거법(10)
- 건강검진기본법(16)
-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20)

최근 타 시·도 제·개정 조례

- 서울특별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24)
- 경기도 아동 빈곤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32)
- 경기도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37)
- 전라남도 민주화운동 기념에 관한 조례(47)
- 제주특별자치도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기본조례(49)

최근 중앙정부의 지방관련 동향

- 지방직 9급공무원, 고위직 승진소요 연수 단축된다(60)
- 유아동 인터넷중독률 성인보다 높다(62)
- 새로운 지방세 납부시스템, 명칭 선호도 조사 실시(65)
- 음식점 가격표시 혼선 없앤다(66)
- 노인틀니 건보적용, 전월세는 보험료 부담 줄어(68)
- 기술유출 방지, 전자지문으로 해결(71)
- 조달청, 스마트 나라장터 서비스 확대(73)
- 무당벌레, 뿔영벌, 굼벵이도 이제 당당한 생명자원(75)
- 전통시장 사용 현금영수증 등 소득공제 확대(80)

선거관련 정보

- (74)

행복한 책임기

- (78)

최근 제·개정 법령

최근 제·개정 법령

1.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5
2. 정치자금법	6
3. 정당법	8
4. 공직선거법	10
5. 건강검진기본법	16
6. 지방공무원 임용령	18
7.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20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공포 2012.2.22 시행 2012.8.23]

1. 개정이유

독도는 역사적, 지형학적으로 명백한 우리나라 영토로서, 국제법상으로는 영토주권 요건인 실효적 지배를 하고 있는 확고한 우리의 영토이므로 대한민국의 영토로서 독도를 항구적으로 보존·관리하기 위하여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기본계획에 독도와 연계한 관광 촉진, 독도 거주민 및 취항 선박의 지원, 독도 주변 해양과학 연구를 위한 시설물의 설치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연구기관·민간단체에 대한 재정 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독도에 대한 접근성을 제고하고 독도의 유인화를 공고히 하는 한편,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고, 길고 복잡한 문장은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가.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기본계획의 내용에 독도와 연계한 관광 촉진에 관한 사항, 독도 거주민의 지원에 관한 사항, 독도 취항 선박의 지원에 관한 사항, 독도 주변 해양과학 연구를 위한 시설물의 설치에 관한 사항, 독도 관련 민간단체 지원에 관한 사항, 독도와 관련한 교육과 홍보활동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함(안 제5조).
- 나. 독도지속가능이용위원회에 독도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이 참여하도록 하고 위원 수를 12명 이내에서 20명 이내로 증원함(안 제7조제2항 및 제3항제1호).

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독도와 관련된 연구 조사 또는 홍보를 수행하는 연구기관이나 민간단체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9조제3항 신설).

라. 국가는 독도 관련 사업을 시행하는 지방자치단체 또는 관계 기관이나 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함(안 제12조 신설).

3.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정치자금법

[공포 2012.2.29 시행 2012.2.29]

1. 개정이유

정치자금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당비 및 후원금의 영수증 교부 기한을 단축하고, 선거비용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자료를 허위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며, 대통령선거경선후보자가 경선이 종료되어 그 신분이 상실됨으로 인하여 후원회가 해산하는 경우 등을 후원회의 해산 신고 대상에서 제외하고, 반환받은 기탁금과 보전받은 선거비용을 정당 또는 공익법인에 인계하는 기한을 통일하는 한편, 일부 불명확한 규정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연간 모금·기부한도액의 특례 규정 및 정당과 후원회의 회계보고 시 첨부서류 제출 규정을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가. 당비 및 후원금의 영수증은 납부 또는 기부받은 날부터 30일 까지 당원 또는 후원인에게 교부하도록 함(안 제5조제1항 및 제17조제1항).
- 나. 공직선거가 있는 연도에 연간 모금·기부한도액의 2배를 모금·기부할 수 있는 후원회는 같은 연도에 2 이상의 전국단위 공직선거가 실시되는 경우에도 평년의 2배만을 모금·기부할 수 있도록 함(안 제13조제1항).
- 다. 대통령선거경선후보자와 당대표경선후보자가 경선이 종료되어 그 신분이 상실됨으로 인해 후원회가 해산하는 경우는 후원회 해산 신고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함(안 제19조제3항).
- 라. 정당 및 후원회가 회계보고를 하는 때에 자체 감사기관의 감사 의견서와 대의기관·예산결산위원회의 심사의결서 사본을 각각 제출하도록 명확히 함(안 제40조제4항제4호).
- 마. 선거비용의 수입과 지출내역 확인을 위한 자료제출 요구에 대해 허위의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에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안 제49조제2항제8호).
- 바. 「질서위반행위규제법」과 중복된 과태료 부과·징수 절차 조항을 삭제함(제51조제5항부터 제7항까지 삭제).
- 사. 선거비용 관련 범죄의 확정판결을 행한 재판장은 그 판결서 등본을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송부하도록 함(안 제56조제2항).
- 아. 반환받은 기탁금과 보전받은 선거비용은 선거비용을 보전 받는 날부터 20일 이내에 정당 또는 공익법인에 인계하도록 인계 일자를 통일함(안 제58조제1항 및 제4항).

3.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정당법

[공포 2012.2.29 시행 2012.2.29]

1. 개정이유

현실적으로 정당 활동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국회부의장의 수석비서관 등을 당원이 될 수 있는 공무원의 범위에 포함하고, 정당 사무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하여 중앙당의 당원명부 전산 관리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며, 정책선거 분위기 조성을 위한 공익광고의 근거를 마련하고,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의 내용과 중복되는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국회부의장의 수석비서관, 비서관, 비서, 행정보조요원, 국회 상임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의 행정보조요원, 국회의원의 보좌관·비서관·비서, 국회 교섭단체 대표의원 행정비서관, 국회 교섭단체의 정책연구위원·행정보조요원은 정당의 발기인 및 당원이 될 수 있게 함(안 제22조 제1항제1호 단서).

나. 중앙당은 시·도당의 당원명부에 근거하여 당원명부를 전산 조직에 의하여 통합 관리할 수 있도록 함(안 제24조제2항 신설).

다. 지상파방송사는 임기만료에 의한 공직선거가 실시되는 연도에 정책선거 활성화를 위한 공익광고를 5회 이상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으로 정하는 시간대에 하여야 함(안 제39조의2 신설).

라. 「질서위반행위규제법」과 중복되는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규정을 삭제함(제62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 삭제).

3.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공직선거법

[공포 2012.2.29 시행 2012.2.29]

1. 개정이유

「공직선거법」 제93조제1항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한정위헌결정의 취지를 반영하여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그 게시판·대화방 등에 글이나 동영상 등의 게시나 전자우편·문자메시지 전송에 의한 사전선거운동을 허용하고, 선상에서 장기 기거하는 선원들이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제18대 대통령선거부터 선상부재자투표제도를 도입하며, 2013년 1월 1일부터 부재자투표에서 통합선거인명부를 활용한 사전투표제도를 신설하여 선거일 전에 투표하려는 선거인이 부재자신고 없이도 부재자투표기간에 투표를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투표편의를 제고하고, 재외선거의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국외에서 중대한 선거범죄를 행한 자에 대하여 여권의 발급 등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며, 국외에서 공직선거법 위반행위를 한 외국인에 대하

여는 입국을 금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재외선거사범 등에 대한 영사 조사제도 및 인터넷화상조사제도를 도입하는 한편, 여론조사결과를 왜곡하여 보도하거나 객관적인 근거 없이 선거결과를 예측하는 보도를 하는 경우 처벌규정을 신설하는 등 여론조사의 객관성·공정성을 강화하고, 국회의원지역선거구를 인구수, 행정구역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확정하여 유권자의 투표가치에 대한 평등 원칙이 보장되도록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정보통신망 이용 선거운동 확대 등

- 1)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그 게시판·대화방 등에 글이나 동영상 등을 게시하거나 전자우편·문자메시지 전송에 의한 사전선거운동을 허용하고,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 없이 투표참여를 권유하는 행위를 선거운동으로 보지 아니함(안 제58조제1항제5호 신설, 안 제59조제2호·제3호).
- 2) 후보자도 인터넷 홈페이지 관리·운영자 또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직접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는 게시물 등에 대한 삭제 요청 등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82조의4제3항).
- 3)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문자·음성·화상·동영상 등을 인터넷 홈페이지의 게시판·대화방 등에 게시하거나 전자우편·문자메시지로 전송하게 하고 그 대가를 제공 또는 그 제공의 의사표시를 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고, 그 대가를 제공받은 자에게는 10배 이상 50배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안 제230조제1항제5호, 안 제261조제6항제2호 신설)

나. 선상부재자투표제도 도입

- 1) 대통령선거와 임기만료에 따른 국회의원선거에서 원양어업·외항여객운송사업·외항화물운송사업에 사용되는 대한민국 선박 등에 승선하고 있는 선원이 선거일에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는 때에는 해당 선박에 설치된 팩시밀리를 이용하여 선상부재자신고 및 선상투표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실시하는 임기만료에 따른 대통령선거부터 적용하도록 함(안 제38조제2항, 안 부칙 제2조 신설).
- 2) 선상부재자신고를 한 선원이 승선하고 있는 선박의 선장은 선거운동 또는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함(안 제60조제1항제9호 신설, 안 제86조제1항).
- 3)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는 선상투표용지를 작성하여 해당 선상투표자가 승선하고 있는 선박의 선장에게 선거일 전 9일까지 팩시밀리를 이용하여 전송하도록 하고, 선장이 선상투표용지를 받은 때에는 즉시 해당 선상투표자에게 인계하도록 함(안 제154조의2 신설).
- 4) 선상투표기간은 선장이 선거일 전 8일부터 선거일 전 5일까지의 기간 중 해당 선박의 선상투표자의 수와 운항사정 등을 고려하여 선상투표를 할 수 있는 일시를 정하도록 함(안 제158조의2제1항 신설).
- 5) 선상투표자는 선상투표용지의 선거인 확인란에 서명한 후 1명의 후보자(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에서는 하나의 정당을 말한다)를 선택하여 해당란에 기표한 다음 선상투표소에 설치된 팩시밀리로 직접 해당 시·도선거관리위원회에 전송하도록 함(안 제158조의2제5항 신설).

- 6) 선상투표와 관련한 범죄자 처벌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선박에서 범한 선거범죄의 공소시효는 범인이 국내에 들어온 날부터 6개월을 경과함으로써 완성되도록 함(안 제268조 제2항 신설).

다. 통합선거인명부 도입 등

- 1)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구·시·군의 장으로부터 선거인명부의 전산자료 복사본을 제출받아 전산조직을 이용하여 하나의 선거인명부(통합선거인명부)를 작성한 후 부재자투표소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함(안 제158조의3제1항 신설).
- 2) 통합선거인명부를 사용하는 경우 부재자투표기간은 선거일 전 5일부터 2일간으로 하며, 선거인은 누구든지(거소투표대상자, 기관·시설거주자 및 보궐선거 등에 있어서 선거구 밖에 거소를 둔 사람은 제외한다) 부재자신고 없이도 부재자투표기간 중에 부재자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도록 하되, 통합선거인명부를 이용한 부재자투표제도는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함(안 제158조의3제2항부터 제9항까지 신설, 안 제201조제7항, 안 부칙 제1조 신설).

라. 재외선거의 공정성 확보

- 1) 외교통상부장관은 국외에서 장기 3년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선거범죄를 범한 혐의를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으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조사에 불응하거나 소재가 불명하여 조사를 종결할 수 없는 사람 등에 대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또는 검사의 요청이 있는 때에 여권의 발급·재발급을 제한하거나 여권의 반납을 명하도록 하고, 여권의 발급·재발급 제한기간 또는 반납된 여권의 보관기간은 해당 선거의 선거일 후 5년 이내로 함(안 제218조의30 신설).

- 2) 법무부장관은 국외에서 이 법에서 금지하는 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외국인에 대하여 입국을 금지할 수 있고, 입국금지기간은 해당 선거 당선인의 임기만료일 까지로 함(안 제218조의31 신설).
- 3) 영사는 법원 또는 검사의 의뢰를 받아 대한민국 재외공관 등에서 선거범죄의 피의자 또는 피의자 아닌 자의 출석을 요구하여 진술을 들을 수 있도록 함(안 제218조의32 신설).
- 4)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재외공관에 출석한 선거범죄의 피의자 또는 피의자 아닌 자를 상대로 인터넷 화상장치를 이용하여 진술을 들을 수 있도록 함(안 제218조의33 신설).

마. 여론조사제도 개선

- 1)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결과를 왜곡하여 공표 또는 보도할 수 없도록 하고, 방송·신문·통신·잡지, 그 밖의 간행물을 경영·관리하는 자 등이 여론조사결과 등과 같은 객관적 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하고 선거결과를 예측하는 보도를 하는 행위를 금지하며,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도록 함(안 제96조, 안 제252조제1항).
- 2)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피조사자에게 여론조사기관·단체의 명칭, 주소 또는 전화번호와 조사자의 신분을 밝혀야 하고,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때에는 표본의 크기(연령대별·성별 표본의 크기를 포함한다), 조사된 연령대별·성별 표본 크기의 오차를 보정한 방법 등을 함께 공표 또는 보도하여야 함(안 제108조제4항·제5항).
- 3)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경우에는

해당 여론조사를 실시한 기관·단체는 해당 여론조사의 조사 설계서·피조사자선정·표본추출·질문지작성·결과분석 등 조사의 신뢰성과 객관성의 입증에 필요한 자료를 자신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하고, 관할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여론조사와 관련된 자료제출의 요구를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이에 따르도록 함(안 제108조제6항·제7항 신설).

4)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에게 편향되도록 하는 어휘나 문장을 사용하여 질문하는 방식 등으로 여론조사를 하거나, 여론조사결과 공표·보도시 함께 공표·보도하여야 하는 요소를 같이 공표·보도하지 아니한 경우 벌칙을 현행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 조정함(안 제256조제1항·제2항).

바. 출구조사 거리제한을 현행 “투표소로부터 100미터 밖”에서 “투표소로부터 50미터 밖”으로 완화함(안 제167조제2항 및 제241조제1항).

사. 제19대 국회의원선거에 적용하기 위하여 국회의원지역선거구 구역표를 개정함(별표 1).

3.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1조제1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2012년 7월 1일부터, 제158조의3·제179조제4항제10호 및 제201조제7항의 개정규정은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건강검진기본법 시행규칙

[공포 2012. 3.7 시행 2012.3.7]

1. 개정사유

「의료법」이 개정되어 한방병원 또는 치과병원에서도 건강검진이 가능해 짐에 따라 의사를 두어 의과 진료과목을 추가로 설치·운영하고 있는 한방병원 또는 치과병원에 대하여 검진기관 지정신청 자격을 부여하고, 「암관리법」이 개정되어 암검진기관의 평가에 관하여도 건강검진기본법령에서 규율하게 됨에 따라 암검진기관 평가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한편, 검진기관의 현황 등이 변경된 경우 검진기관 지정취소 및 재지정 신청을 해야 하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검진기관 현황 등 변경신고 절차를 신설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검진기관 현황 등 변경신고 절차 신설(안 제5조제5항 및 제6항 신설)

- 1) 현재는 검진 인력·시설 또는 장비 등의 현황이 변경된 경우 신고 절차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검진기관이 검진기관 평가 등에 있어서 불이익을 받지 않으려면 부득이 검진기관 지정 취소를 받은 후 변경된 현황을 기초로 다시 검진기관 지정 신청을 해야 하는 등의 불편이 있음.
- 2) 위와 같은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검진기관 현황 등 변경 신고 절차를 신설함.

나. 암검진기관 평가에 관한 규정 정비(안 제8조제3항 단서 신설, 현행 제11조 삭제)

- 1) 암검진기관에 대한 평가에 관하여는 암관리법령에서, 일반·영유아·구강검진기관에 대한 평가에 관하여는 건강검진기본법령에서 각각 규율하던 것을 건강검진기본법령에서 통합 규율하는 내용으로 「암관리법」이 개정(법률 제10333호, 2010. 5. 1. 공포, 2011. 6. 1. 시행)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할 필요가 있음.
- 2) 암검진기관에 대한 평가에 관하여는 「암관리법 시행령」 제 8조의3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의2를 준용하도록 하던 것을 암검진기관에 대한 평가에 관하여도 원칙적으로 「건강검진기본법 시행규칙」 상의 검진기관에 대한 평가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도록 하되, 암검진기관 평가의 경우에는 암종별 전문영역에 대한 평가가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하여 암검진기관의 전문평가는 일반평가 결과와 관계없이 서면조사 또는 방문조사의 방법으로 실시하도록 함.

다. 한방병원 또는 치과병원에 대한 검진기관 지정신청 자격 부여 (안 별표 1)

- 1) 한방병원 또는 치과병원도 의과 진료과목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의료법」이 개정(법률 제9386호, 2009. 1. 30. 공포, 2010. 1. 31. 시행)되어 한방병원 또는 치과병원에서도 건강검진이 가능해짐에 따라 검진기관 지정신청 자격을 부여할 필요가 있음.
- 2) 의사를 두어 의과 진료과목을 추가로 설치·운영하고 있는 한방병원 또는 치과병원에 대하여 일반검진기관 지정신청 자격을 부여함.

3.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지방공무원 임용령

[공포 2012.2.28 시행 2012.2.28]

1. 개정이유

국가안보 및 보안·기밀 등의 분야에 복수국적자의 임용을 제한하는 내용으로 「지방공무원법」이 개정(법률 제10700호, 2011. 5. 23. 공포, 8. 24. 시행)됨에 따라 복수국적자의 임용제한 분야를 구체적으로 정하는 한편, 육아휴직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육아휴직 기간의 근무성적평정을 할 수 있도록 하고,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 등 취약계층의 공무원임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임용 시험제도를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복수국적자의 임용을 제한할 수 있는 업무 분야를 구체적으로 정함(안 제3조의2제2항 신설)

- 1) 국가안보, 보안·기밀 등의 분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야에는 복수국적자의 임용을 제한할 수 있도록 「지방공무원법」이 개정됨.
- 2) 이에 따라 복수국적자의 임용을 제한할 수 있는 업무 분야를 국가안보와 관련되는 정보·보안·기밀 및 범죄수사에 관한 분야, 국제협정에 관한 분야, 남북간 대화·교류·협력에 관한 분야 등으로 정함.

나. 육아휴직자 근무성적평정 방법 개선(안 제31조의3제2항)

육아휴직으로 근무성적평정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직무에 복귀

한 후 첫 번째 정기평정을 하기 전까지 최근 2회의 근무성적
평정의 평균을 해당 공무원의 근무성적평정으로 보도록 함.

다. 장애인 및 저소득층의 공무원 임용 촉진(안 제42조제3항, 안
제51조의5 신설)

- 1) 9급 공개경쟁임용시험의 저소득층 구분모집 대상에 2년 이상
계속하여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인 사람을
추가함.
- 2) 6급 이하 공개경쟁임용시험의 장애인 구분모집 및 9급 공개
경쟁임용시험의 저소득층 구분모집에 따른 시험 결과 시험
성적이 일반모집 합격자의 시험성적 이상인 구분모집 응시자에
대해서는 선발예정 인원을 초과하여 합격시킬 수 있도록 함.

3.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공포 2012.2.29 시행 2012.3.11]

1. 개정이유

지방교육행정기관이 운영 중인 표준정원제를 총액인건비제로 전환하여 효율적인 교육행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시·도 교육청의 기구 설치 기준을 완화하여 조직 운영의 자율성을 향상시키며, 조직관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총액인건비를 기준으로 한 기구 및 정원의 관리원칙 마련(안 제4조)

지방교육행정기관이 지역 교육행정수요에 대응한 적절한 교육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현행 표준정원제를 총액인건비제로 전환함.

나. 기구 설치 기준의 조정(안 제8조)

시·도 교육청 본청의 과·담당관의 설치 기준을 폐지하고, 종전에 지역적 특색에 따른 다양한 교육행정 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시·도교육청의 본청에 여유기구로 과·담당관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을 폐지함.

다. 조직관리위원회의 설치(안 제28조)

지방교육행정기관의 기구와 정원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교육감 소속으로 조직관리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

3. 시행일

이 영은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2 중 비고 제1호, 제2호 및 제3호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17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12년 5월 24일부터 시행하며, 제2조제1호의 개정규정은 201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최근 타 시도 제·개정 조례

최근 타 시도 제·개정 조례

1. 서울특별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 ... 24
2. 경기도 아동 빈곤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32
3. 경기도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 37
4. 전라남도 민주화운동 기념에 관한 조례 47
5. 제주특별자치도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기본조례 ... 49

서울특별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

1. 개정이유

주민자치의 실현과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주민주도의 마을공동체 만들기를 활성화하고, 이를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마을공동체 만들기의 기본원칙을 규정함(안 제3조).

나.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에 대한 주민의 권리와 책무를 규정함(안 제4조).

다.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의 지원을 위한 시장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5조).

라.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서울특별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등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6조 및 제7조).

마. 마을공동체 행정협의회의 설치·운영을 규정함(안 제8조).

바.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에 대한 행정적 지원 및 사업비 지원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9조).

사. 마을공동체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위원회의 구성, 위원의 임기, 위원장 직무 등을 규정함(안 제14조부터 제17조까지)

아.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종합지원센터의 설치 및 기능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22조 및 제23조).

자. 종합지원센터의 관리 및 운영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24조).

서울특별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자치의 실현과 민주주의의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주민이 주도하는 마을공동체 만들기를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마을”이란 주민이 일상생활을 영위하면서 경제·문화·환경 등을 공유하는 공간적·사회적 범위를 말한다.
2. “마을공동체”란 주민 개인의 자유와 권리가 존중되며 상호대등한 관계 속에서 마을에 관한 일을 주민이 결정하고 추진하는 주민자치 공동체를 말한다.
3. “마을공동체 만들기”란 지역의 전통과 특성을 계승 발전시키고 지역의 인적·물적 자원을 활용해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활동을 말한다.

제3조(기본원칙) 마을공동체 만들기는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추진하여야 한다.

1. 마을공동체 만들기는 주민간의 긴밀한 관계형성을 통한 주민 공동체 회복을 지향한다.
2. 마을공동체 만들기는 주민의 참여를 기반으로 주민이 주도한다.
3. 마을공동체 만들기는 주민 및 마을의 개성과 문화의 다양성을 존중한다.
4. 마을공동체 만들기는 주민과 행정기관의 상호신뢰와 협력을 통해 추진한다.

제4조(주민의 권리와 책무) 주민은 누구나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을 추진할 권리를 가지며 스스로의 책임과 역할을 인식하고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야 한다.

제5조(시장의 책무) 서울특별시(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주민의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을 적극 지원하여야 하며 마을공동체 활성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제2장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

제6조(기본계획) ① 시장은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 단위로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서울특별시(이하 “서울시”라 한다) 마을공동체 만들기 정책방향
2. 서울시 마을공동체 종합지원센터 설치·운영
3. 서울시 마을공동체 행정협의회 구성·운영
4. 서울시 마을공동체 위원회 등 민·관 협력체계 구성·운영
5.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의 효율적 추진방안 및 지원체계
6. 그 밖에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에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기본계획 수립 시 주민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여야 한다.

제7조(연도별 시행계획) ① 시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서울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추진방향 및 주요 사업계획
 2.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에 대한 행정·재정적 지원
 3. 그 밖에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 ③ 시장은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할 때에는 기본계획 및 서울시의 주요정책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8조(마을공동체 행정협의회) 시장은 특정지역의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을 담당하는 서울시 및 자치구 관련 부서들의 원활한 업무 추진을 위해 필요한 경우 마을공동체 행정협의회(이하 “행정협의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9조(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에 대하여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내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주거환경 및 공공시설 개선
2. 마을기업 육성
3. 환경·경관의 보전 및 개선
4. 마을자원을 활용한 호혜적 협동조합
5. 마을공동체 복지증진
6. 마을공동체와 관련된 단체·기관 지원
7. 마을 문화예술 및 역사보전
8. 마을학교 운영
9. 마을공동체와 관련된 연구·조사
10. 그 밖에 마을공동체 만들기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제10조(지원신청) ① 주민이 사업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지원을 얻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시장 또는 구청장 등에게 서면으로 지원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 시장 또는 구청장은 지원신청을 받은 때에는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 등을 검토하여 지원여부와 지원금액 등을 결정하여야 한다.

제11조(평가·포상) ① 시장은 매년 사업을 분석·평가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기관에 사업의 분석·평가를 의뢰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마을공동체 만들기에 기여한 주민 또는 민간단체 등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제12조(사업비의 환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될 때에는 사업비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1. 사업비를 목적 외에 사용하거나 지원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2. 법령 또는 조례를 위반하였을 때

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비를 지원 받았을 때

4.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사업이 지연되었을 때

5.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을 위반하거나 허위 보고를 하였을 때

제13조(형성재산의 사용) 사업에 대한 재정지원에 의하여 형성된 재산을 타 용도로 사용하고자 할 경우나 양도·교환·대여 등을 하고자 할 때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3장 서울특별시 마을공동체 위원회

제14조(설치 및 기능) ① 마을공동체 만들기 정책 및 사업을 심의하고 발전방향을 자문하기 위하여 서울시 마을공동체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마을공동체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마을공동체 만들기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2.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의 지원
3. 서울시 마을공동체 종합지원센터(이하 “종합지원센터”라 한다) 위탁(재계약을 포함한다) 및 운영
4. 종합지원센터의 연도별 사업계획 수립
5. 그 밖에 마을공동체 만들기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15조(구성) ① 위원회는 공동위원장 2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공동위원장은 정무부시장과 위촉직 위원 중에서 선출하는 1명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성하며, 당연직 위원은 혁신·주택·경제·복지·문화·자치행정 분야 등 관련 부서 국장으로 한다.

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서울시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서울시의원 2명
2. 주민 대표, 전문가 및 마을공동체 만들기에 대하여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마을공동체담당관이 된다.

제16조(임기)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단, 위원 결원으로 인해 새로 위촉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②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17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8조(회의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연 2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1. 시장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2.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3.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9조(관계부서의 협조)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안전에 관련되는 공무원 및 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20조(회의록) 위원회의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제21조(수당) 위원회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 및 관계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4장 서울특별시 마을공동체 종합지원센터 등

제22조(종합지원센터 설치) 시장은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종합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

제23조(종합지원센터 기능) 종합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종합지원센터 사업계획의 수립 및 시행
2. 마을공동체 기초조사, 사업 분석·평가·연구
3. 마을공동체의 사업계획 수립·실행 지원
4. 마을공동체 민간단체의 네트워크 사업
5. 마을공동체 일꾼 발굴 및 육성
6. 마을공동체 만들기 관련 교육·홍보·전파
7. 마을공동체 만들기 자원관리
8. 그 밖에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24조(관리 및 운영) ① 시장은 종합지원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관련 법인이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계약할 수 있다.

③ 수탁기관은 연도별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④ 시장은 예산의 범위내에서 종합지원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와 사업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⑤ 시장은 종합지원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소속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

제25조(지도 감독) ① 시장은 수탁기관에 대하여 위탁사무의 처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위탁사무 지도·감독에 필요한 서류 및 시설 등을 검사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검사결과 위탁사무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조치할 경우에는 문서로 수탁기관에 통보하고 사전에 의견진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26조(위탁계약 취소 등) ① 시장은 수탁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1. 수탁기관이 법령이나 조례를 위반하는 때

2. 수탁기관이 위탁계약을 위반한 때

② 시장이 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수탁기관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이 취소된 때에는 수탁기관은 지체없이 위탁받은 시설 및 축적된 지적재산 등을 반납하여야 한다.

제27조(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 마을공동체 만들기를 추진함에 있어서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경기도 아동 빈곤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1. 제정이유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의 제정근거에 따라 경기도에서 아동을 빈곤으로부터 예방하고, 아동성장에 필요한 복지·교육·문화 등의 분야에서 소외와 차별을 받지 아니하여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가. 도지사가 복지·교육·문화 지원 등 빈곤아동정책의 수행에 필요한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도록 하고,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함.(안 제3조)
- 나. 도지사와 경기도교육감이 경기도 아동빈곤예방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되, 필요한 경우 양자가 협력하여 공동으로 노력하도록 함.(안제4조)
- 다. 도지사가 경기도 아동빈곤 예방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고, 그 위원회가 도지사나 교육감이 수립하는 시행계획의 기본방향 및 정책 등에 자문할 수 있도록 함.(안 제5조)
- 라. 위원회의 구성, 위원장의 직무 및 위원회의 소집 등을 규정함.(안 제7조부터 제10조 까지)

경기도 아동 빈곤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경기도에서 아동을 빈곤으로부터 예방하여 아동성장에 필요한 복지·교육·문화 등의 분야에서 소외와 차별을 받지 아니하여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원활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동”이란 아동복지법 제2조제1호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라 18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
2. “아동빈곤”이란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라 아동이 일상적인 생활여건과 자원이 결핍하여 사회적·경제적·문화적 불이익을 받는 빈곤한 상태를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① 도지사는 복지·교육·문화 지원 등 빈곤아동정책의 수행에 필요한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업무수행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빈곤아동의 안전·건강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빈곤아동과 그 보호자 및 가정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빈곤아동이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받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경기도 아동빈곤예방 시행계획) ① 도지사는 도내에 아동의 빈곤을 예방하기 위한 경기도 아동빈곤예방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시행한다.

② 경기도교육감은 경기도의 학교에 재학 중인 아동의 빈곤을 예방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한다.

③ 경기도의 아동에게 빈곤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경기도지사와 경기도 교육감은 협약을 체결하여 아동의 빈곤예방을 위하여 공동으로 노력할 수 있다.

제5조(경기도 아동빈곤 예방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도지사는 도내 아동빈곤의 예방 및 빈곤아동의 지원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경기도 아동빈곤 예방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한다.

1. 도지사가 수립하는 시행계획의 기본방향 및 정책
2. 교육감이 수립하는 시행계획의 기본방향 및 정책
3. 예산 지원 및 사업 평가
4. 도지사와 교육감의 협력사안
5. 그 밖에 도지사와 교육감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6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9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경기도의 여성가족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경기도교육청 교육국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1. 빈곤아동의 복지 및 지원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빈곤아동 지원시설의 운영자, 학부모 단체, 아동·청소년 단체 또는 비영리민간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③ 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원활히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고, 간사는 여성가족국 소관 업무담당과장이 되며, 서기는 담당이 된다.

⑤ 간사는 위원회에 상정된 안건의 검토의견을 제출하거나 심의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고, 서기는 회의록을 작성한다.

제7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 또는 출석한 사람의 발언이나 행동이 중복되거나 안건과 관계없는 발언이나 소란 등으로 의사진행에 지장이 있을 경우에는 이를 중지시킬 수 있다.

④ 위원장은 위촉된 위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

1. 법령을 위반하여 범법행위를 한 경우

2. 위원의 품위를 손상하여 사회적 물의가 발생한 경우

3. 그 밖에 위원장이 위원회의 회의에서 정하는 사항

제8조(위원회 소집) ① 위원장은 도지사나 교육감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15일 이내에 위원회를 소집하여야 하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시로 위원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의일시·장소 및 안건

등을 회의개최 10일 전까지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 시 자문요청서에 대한 설명은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담당과장이 관련 자료를 준비하여 설명하여야 한다.

제9조(위원회의 조사 등) 도지사는 아동빈곤의 실태파악, 현황 등 필요한 사안이 있는 경우 관계인·참고인 또는 감정인에게 출석하여 진술 또는 감정하게 하거나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제10조(수당과 여비) 도지사는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경기도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에서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경기도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

1. 제정이유

- 가.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의 실효적 이행을 통하여 장애인의 차별과 인권 침해를 예방하고
- 나. 사회 전반에 걸친 모든 영역에서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참여와 평등을 이룩함으로써 더불어 사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장애인의 차별을 금지하고 인권보장을 위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장애인의 차별과 인권침해를 예방하여 모든 영역에서 장애인의 사회참여와 평등을 보장하기 위한 조례 제정 목적을 정함(안 제1조)
- 나. 장애인에 대한 차별금지 및 사회참여 확대를 위한 도지사의 책무와(안 제3조)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도의 정책개발에(안 제4조) 관한 내용을 정함
- 다.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정책에 대하여 매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기본계획의 내용(안 제 6조), 기본 계획 수립절차(안 제7조), 매년 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안 제8조)에 대하여 정함
- 라. 도지사는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교육(안 제9조) · 홍보(안 제10조) ·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조사결과를 의회에 보고(안 제11조)하도록 함.

경기도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안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의 실효적 이행을 통하여 도내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차별과 인권 침해를 예방하고, 모든 생활영역에서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 참여와 평등을 이룩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① "장애"란 신체적·정신적 손상 또는 기능상실이 장기간에 걸쳐 개인의 일상 또는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초래하는 상태를 말한다.
- ② "장애인"이란 제1항에 따른 장애가 있는 사람을 말한다.
- ③ "장애인 관련자"란 장애인을 돕기 위한 목적에서 장애인을 대리·동행하는 자로서 장애아동의 보호자 또는 후견인 그 밖에 장애인을 돕기 위한 자임이 통상적으로 인정되는 자를 포함한다.
- ④ "장애인 차별금지"란 누구든지 장애 또는 과거의 장애경력 또는 장애가 있다고 추측됨을 이유로 차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것을 말한다.
- ⑤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국가인권위원회법」, 「장애인복지법」 및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등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①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장애인에 대한 차별금지 및 사회참여 확대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장애인 및 장애인 관련자(이하 "장애인 등"이라 한다)에 대한 모든 차별과 인권침해를 방지하고, 장애인 등의 권리를 구제할 책임이 있으며, 장애인 차별과 인권침해를 실질적으로 해소하기 위하여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장애인 등에게 정당한 편의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필요한 기술적·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4조(정책개발) ① 도지사는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1. 장애인 차별 및 인권보장에 관한 실태조사 및 보고서 작성
2. 정당한 편의제공에 관한 사항
3.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4. 장애인 등의 사회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한 정책에 관한 사항
5. 여성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과 폭력피해 여성장애인을 위한 정책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② 도지사는 도와 소속기관, 시장·군수에게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장보장을 위하여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도록 권고하고 그 결과를 점검하여야 한다.

제5조(장애인 등의 권리와 경기도민의 책무) ① 모든 장애인은 차별과 인권침해가 없는 지역사회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진다.

② 장애인을 비롯한 경기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은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도와 시·군의 계획과 정책 전반에 관한 정보에 대하여 알 권리를 가진다.

③ 도민은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통합을 위한 차별금지과 인권보장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2장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정책

제6조(기본계획) ① 도지사는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중·장기 정책목표 및 방향을 설정하고, 이에 따른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의 기본목표와 추진방향
2.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의 목표 달성을 위한 장애 유형별, 분야별, 단계별 추진과제 및 그 추진방법
3. 장애인 차별금지과 인권보장에 관한 정책개발 및 추진전략
4.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련된 여건 변화와 전망
5. 실태조사를 위한 지표 개발
6. 행·재정상의 지원 및 재원 조달 방안
7. 그 밖에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정책을 위해 필요한 사항

③ 도지사는 기본계획 수립 시 소요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재정상의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제7조(기본계획의 수립절차) ① 도지사는 기본계획을 결정하거나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도 홈페이지에 공고절차 등을 거쳐 장애인 및 장애인 관련 단체를 비롯한 도민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을 결정하거나 변경할 시에는 경기도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③ 도지사는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련이 되는 주요 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기본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④ 도지사는 기본계획을 도 홈페이지에 상시 게시하여야 한다.

제8조(시행계획의 수립) ① 도지사는 기본계획에 따른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정당한 편의제공을 위한 장애 유형별 세부 시책
2. 여성장애인, 장애아동, 정신상 장애인을 위한 세부 시책
3. 장애인 차별 및 인권침해 실태와 대응 방안
4.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을 위한 도민 참여 활성화 방안과 지원 방안 등

③ 도지사는 시행계획을 조정하고, 그 이행 상황을 점검하여야 한다.

제9조(교육) ① 도지사는 도, 소속 기관, 장애인·장애인복지시설 및 단체 종사자, 사업주 등 도민을 대상으로 하는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가정, 학교, 사업장 및 평생교육시설과 그 밖에 연수 교육 과정에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을 위한 교육이 실시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연간 교육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및 대한민국이 가입한 장애인 인권에 관한 국제조약 및 유엔 장애인 인권선언 등
2. 장애인 차별과 인권침해 행위의 개념과 사례

3. 교육 프로그램 및 교재 개발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필요한 사항

④ 도지사는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을 위한 교육을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10조(홍보) ① 도지사는 도 및 소속 기관, 장애인·장애인복지시설 및 단체 종사자, 사업주 등 도민을 대상으로 하는 장애인 차별금지와 예방에 관한 홍보를 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장애인 차별금지와 인권보장에 관한 별도의 배너를 도 홈페이지에 개설·운영해야 한다.

③ 도지사는 장애인 차별금지와 인권보장에 관한 안내서를 비롯한 홍보물을 제작·배부해야 한다.

제11조(실태조사) ① 도지사는 장애인의 차별사례 등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장애인차별 및 인권보장에 관한 실태조사는 일반적인 실태뿐만 아니라 도 및 시·군의 자치법규와 지침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도지사는 실태조사를 실시한 후에는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실태 개선과 자치법규 및 지침의 제정, 개정, 폐지 등을 요구할 수 있다.

제12조 (장애인 인권센터) ① 도지사는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경기도 장애인 인권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지역을 구분하여 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③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장애인 차별에 대한 상담
 2.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프로그램 연구·개발
 3.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실태조사 및 교육
 4.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기본계획, 시행계획 등 시·군의 이행사항 모니터링 실시
 5. 그 밖에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과 관련된 업무
- ④ 제1항의 센터는 「민법」 제32조 및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에 따라 등록된 법인이나 단체에 센터 설치 및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 ⑤ 제4항에 따른 위탁의 경우 공모를 통하여 공정하고 투명하게 위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탁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 ⑥ 제4항에 따른 센터의 위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이외에는 「경기도 사무위탁 조례」에 따른다.

제3장 경기도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위원회

제13조(설치) 도는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사항을 자문·심의하기 위하여 경기도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14조(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한다.

1.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2.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교육 및 홍보계획
3.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정책
4. 그 밖에 도지사가 부의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등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자문할 수 있다.

제15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보건복지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보건복지국장, 장애인복지과장으로 하고,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도 소속기관의 공무원을 위원으로 참여하도록 한다.

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분야에서 장애인 차별과 인권에 대해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위촉하도록 하되 장애인이 과반수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1. 장애인단체

2. 시민단체

3. 법조계

4. 학계 전문가

5. 경기도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6. 그 밖에 도지사가 위원으로 위촉함이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6조(임기) 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③ 연임의 경우는 임기만료 15일 전까지 재위촉하고, 재위촉이 없는 경우는 위촉해제 된 것으로 본다.

④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위촉직 위원이 금고이상의 형을 받거나, 장기간 불출석 등의 사유로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위촉해제 할 수 있다.

제17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 회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8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정기회의는 매년 1회 이상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에 개최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9조(간사 및 서기)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되, 간사는 소관업무 담당 사무관이 되고, 서기는 소관업무 담당자가 된다.

② 간사는 위원회의 회의에서 발언할 수 있으며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제20조(관계기관 등의 협조) 위원회는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관계기관의 임직원 또는 관계전문가를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제공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21조(수당과 여비 등) 이 조례에 정한 위원회에 출석하는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경기도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2조(시행규칙)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전라남도 민주화운동 기념에 관한 조례

1. 제정이유

- 가. 전라남도에서 발생한 민주화운동을 기념하고 그 정신을 계승하여 민주주의의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함.
- 나. 전남지역 민주화운동의 기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원활히 추진함으로써 도민의 민주시민의식을 고양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가. 이 조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추진할 수 있는 기념사업을 정함(안 제3조)
 - 1) 전남지역 민주화운동 희생자 추모사업
 - 2) 전남지역 민주화운동에 대한 정리·계승 사업
 - 3) 민주시민의식 고양을 위한 교육사업
 - 4) 민주화운동 관련 자료의 수집과 정리를 통한 전시·출판·학술 및 문화사업
 - 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나.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업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함(안 제4조)
- 다.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5조)

전라남도 민주화운동 기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라남도에서 발생한 민주화운동을 기념하고 그 정신을 계승하여 전라남도 도민의 민주정신 고양과 민주주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민주화운동"이란 광주민주화운동 등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수립 이후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권위주의적 통치에 항거하여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회복·신장시킨 활동으로서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시행령」 제2조 각 호에서 정한 활동을 말한다.

제3조(기념사업)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민주화운동을 기념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전남지역 민주화운동 희생자 추모사업
2. 전남지역 민주화운동에 대한 정리·계승사업
3. 민주시민의식 고양을 위한 교육사업
4. 민주화운동 관련 자료의 수집과 정리를 통한 전시·출판·학술 및 문화사업
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위탁) 도지사는 제3조의 기념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 「전라남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업무를 비영리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

제5조(시행규칙) 이 조례에 정한 것 이외의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주특별자치도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기본조례

1. 제정이유

- 가. 현행 「여성발전기본법」 및 그 밖의 여성 관련 법령은 양성평등을 포함하여 여성의 삶과 기회의 증진을 포괄적으로 지원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나, 법을 지역단위에서 구체적으로 집행하기 위한 조치는 미흡한 실정임.
- 나. 이에 제주특별자치도의 지역정책과 지역발전과정이 여성의 삶과 기회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을 극대화함으로써 지역단위의 실질적인 양성평등을 도모하고, 사회적 약자 층 전반에 대해서도 편리하고 인간적인 도시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것임.
- 다. 또한 이 조례는 현재 여성가족부에서 추진하는 국책사업과의 상응을 위하여 절실히 필요하며, 여성친화적 사회환경 구성에 대한 전반적인 사회분위기를 적극 수용하여 선도적인 지방행정을 구현하기 위한 것임.

2. 주요내용

- 가. 여성친화도시 조성계획 수립 등(안 제2장)
- 나. 여성친화도시 조성 기준 등(안 제3장)
- 다. 여성친화도시조성위원회 등(안 제4장)

제주특별자치도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기본조례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성발전기본법」 및 그 밖의 여성 관련 법령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의 지역정책과 발전과정에 양성이 동등하게 참여하고 그 혜택이 모든 주민에게 돌아가며, 여성의 성장과 안전이 구현되는 제주특별자치도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여성관련 법령”이란 양성평등의 촉진,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및 복지증진에 관한 모든 법령을 말한다.
2. “여성친화도시”란 지역정책과 발전과정에 양성이 동등하게 참여하고 그 혜택이 고루 돌아가며 여성의 발전과 안전이 구현되도록 여성정책을 운영하는 지역을 의미한다.
3. “성별영향평가”란 제주특별자치도(이하 “제주자치도”라 한다)의 제반 정책과 더불어 도시기반시설, 공공이용시설, 주거공간 등의 공급 및 이용에 있어 성불균형 문제를 예방하기 위하여 성인지적 관점의 사전 평가를 실시하여 개선방안을 정책에 환류하는 일련의 평가과정을 말한다.
4. “양성 평등”이란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모든 영역에서 남녀평등을 실현하고, 도시서비스의 공급과 접근, 활동의 배분, 편의성 수혜 등에 있어서 양성 간 기회와 조건의 균등을 달성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적용 범위) ①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여성의 삶에 영향을 주는 모든 행정에 우선적으로 적용하여야 한다.

② 도에서 추진하는 행정은 여성친화도시 조성기준에 적합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제4조(책무) ①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관련사업을 발굴, 추진 및 평가에 내실을 기하고 주민, 전문가, 관련단체 및 기관 모두가 협력하고 참여할 수 있는 토대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제주자치도민은 「여성발전기본법」 및 그 밖의 여성관련 법령에 규정된 사항을 준수하고, 제주자치도의 여성친화도시 정책 수립 및 실현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히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여성친화도시 조성계획 수립 등

제6조(계획 수립 등) ①도지사는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여성친화도시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여성친화도시 추진체계
3. 주요 정책과제
4. 세부 추진계획

5. 추진사업 목록

6. 여성친화도시 조성 추진과 관련한 재원의 조달 방법

7. 그 밖의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내용

③ 도지사는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제7조(계획의 실시 등) ①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 추진과 관련된 제반 업무는 모든 부서에서 책임 있게 실시하여야 한다.

② 여성친화도시 주무부서는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주민들의 의견을 정기적으로 수렴하여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여성친화도시 주무부서는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과 관련된 공무원이 성인지적 관점에서 도시를 바라볼 수 있도록 교육 프로그램을 활성화하여야 한다.

제8조(추진실적의 평가) 도지사는 필요한 경우 여성친화도시 추진 실적을 매년 분석·평가하고 그 결과를 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3장 여성친화도시 조성 기준

제9조(조성기준 설정) 여성친화도시 조성 기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본으로 설정한다.

1. 성 평등 정책 협력 기반 구축

2. 여성의 경제·사회적 평등 실현

3. 여성이 안전하고 편리한 도시

4. 여성 사회참여 활성화와 지역 공동체 강화

5. 그 밖의 여성복지 증진

제10조(정책결정 과정 여성참여 확대) ① 도지사는 지역사회 전반에 여성 참여 확대 분위기를 조성하고 정책결정과정에 여성의 대표성을 제고함으로써 정책수립·결정에 양성 평등적 시각을 반영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각종 위원회 등을 설치·운영하는 경우에 여성가족부의 여성정책기본계획을 반영하여 여성위원을 위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각 분야의 전문직 여성들에 대한 인재 풀(pool)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부서장이 위촉직 위원을 추천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여성친화도시 주무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

⑤ 도지사는 제주자치도 여성공무원의 보직관리를 강화하고 관리직 여성공무원 비율을 확대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의 관리직 여성공무원 임용확대 5개년 계획을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⑥ 도지사는 소속 공무원이 가정생활과 직장생활을 조화시킬 수 있도록 출산휴가, 육아휴직제 및 직장보육시설 운영 등의 정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제11조(성별분리통계 작성) 도지사는 성별분리통계를 작성하여 각종사업계획에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2조(성별영향평가 및 예산분석) 도지사는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에 대한 정책의 성별영향평가와 성인지 예산을 분석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3조(도시기반시설) 도지사는 도로 및 교통, 공원 및 녹지, 산업단지, 주거단지 조성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반영하여 여성의 접근성·안전성 등을 개선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여성보행자의 편의와 안전
2. 여성운전자의 편의와 안전
3. 여성 대중교통 승객의 편의와 안전
4. 여성 임신·출산의 편의와 안전
5. 여성 보육·영유아동반의 편의와 안전
6. 가정 직장 양립 환경 조성
7. 그 밖에 도시기반 시설에서의 여성의 편의와 안전

제14조(공공이용시설) 도지사는 사회복지시설 등 공공이용시설 조성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반영하여 여성의 접근성·안전성 등을 개선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여성이용자의 편의와 안전
2. 여성생활자의 편의와 안전
3. 임산부·영유아동반여성의 편의와 안전
4. 여성의 생리적 특성을 고려한 편의와 안전
5. 여성의 성적 안전을 고려한 편의와 안전

제15조(여성능력개발 효율화)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고려하여 여성능력개발 및 취업지원 기관들을 서로 연계하여 생활권별 교육훈련 프로그램 및 역량 강화 사업을 운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가정 및 직장과의 사회교육간 연계를 통한 여성일자리 창출·
 창업지원
2. 시설의 네트워크화를 통한 생활 근접형 교육훈련 지원
3. 사회교육 정보 제공과 상담

4. 직장인의 학습 기회 확충

5. 여성친화 기업 증대

제16조(여성·아동 안전시스템 구축 및 운영) 도지사는 각종 폭력과 위협으로부터 안전한 도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1. 아동·여성 보호지역 연대 사업을 통한 지역 안전망 구축

2. 범죄 및 위험 예방 도민 모니터링단 운영

제17조(가족친화마을 조성 지원) 도지사는 사회적 약자들의 돌봄 부담을 위한 지원체계 조성을 지원하고 주민 역량증진과 마을·가족·행정의 협력체제 구축을 통하여 사회공동체 강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8조(생애주기별 건강관리 증진) 도지사는 여성이 신체적·정신적·사회적 안녕을 누릴 수 있도록 생애주기별 건강관리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9조(지역 특성화 사업 추진) ① 도지사는 각종 사업의 성별 영향평가 결과 및 여성친화도시조성위원회의 제안에 근거하여 특화된 지역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지역 특성화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단체 또는 법인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새로운 택지단지 조성이나 대규모 가로 정비사업 등을 추진할 때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하여 여성 친화적 도시개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장 여성친화도시조성위원회

제20조(설치) ① 도지사 소속으로 제주특별자치도여성친화도시 조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②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그 업무는 「제주특별자치도 여성발전기본조례」 제33조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여성특별위원회가 대행한다.

제21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심의·의결 하고, 자문에 응한다.

1. 여성친화도시 조성 정책의 기본방향 및 전략에 관한 사항
2. 여성친화도시 조성관련 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3. 여성친화도시 조성관련 연구개발, 인력양성 및 인프라 구축에 관한 사항
4. 여성친화도시 조성관련 교육·홍보 및 지식·정보의 보급 등에 관한 사항
5. 여성친화도시 조성관련 중앙정부협력에 관한 사항
6. 여성의 지위향상과 복지증진에 관한 사항
7.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와 능력개발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여 요구하는 사항

제22조(회의) ① 정기회는 연 2회로 하며, 임시회는 위원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 하는 때 또는 소속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한다.

② 위원장은 회의를 개최할 경우에는 각 위원에게 회의일시·장소·토의안건 등을 사전에 통지하여야 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도지사는 위원회에서 의결한 사항을 여성친화도시 조성정책 수립에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23조(의견청취 등)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에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를 위원회에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제공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 5 장 기 타

제24조(유공자 포상) 도지사는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기여한 단체나 개인에게 포상, 국·내외 선진 지역의 견학 등의 기회를 줄 수 있다.

제 6 장 보 칙

제2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최근 중앙정부의 지방관련 동향

최근 중앙정부의 지방관련 동향

1. 지방직 9급공무원, 고위직 승진소요 연수 단축된다 60
2. 유아동(만5~9세) 인터넷중독률 성인보다 높다 62
3. 새로운 지방세 납부시스템, 명칭 선호도 조사 실시 65
4. 음식점 가격표시 혼선 없앤다 66
5. 노인틀니 건보적용, 전월세는 보험료 부담 줄어 68
6. 기술유출 방지, 전자지문으로 해결 71
7. 조달청, 스마트 나라장터 서비스 확대 73
8. 무당벌레, 뒤영벌, 굼벵이도 이제 당당한 생명자원 75
9. 전통시장 사용 현금영수증 등 소득공제 확대 80

지방직 9급공무원, 고위직 승진 소요연수 단축

- ◇ 9급 지방공무원의 고위직 승진소요 연수가 단축된다. 행정안전부는 현재 22년이 소요되는 9급에서 3급까지의 승진소요 최저연수를 16년으로 단축하는 내용의 「지방공무원임용령」 개정안을 3월 14일(수)부터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 승진소요 최저연수란 상위 계급으로의 승진 시 직무수행 자격 및 역량배양을 위해 당해 계급에서 일정기간 재직할 것을 요구하는 법정기간으로서, 현재에는 각 계급별로 최단 2년에서 최장 5년까지의 기간이 설정되어 있다.

【지방공무원 법정 승진소요 최저연수 및 실제 평균 승진소요 연수】

('10. 12월 기준, 단위 : 년)

계 급 기 간	계	3급 ← 4급	4급 ← 5급	5급 ← 6급	6급 ← 7급	7급 ← 8급	8급 ← 9급
승진소요 최저연수	22	5	5	4	3	3	2
실제 평균 소요연수	46.1	6.8	10.1	11.7	10.2	4.2	3.1

- 9급으로 입직한 지방공무원이 3급까지 승진하기 위해서는 법령상 최소 22년이 걸리며, 실제로는 평균 46년이 소요되는 등 고위 공무원 승진이 매우 어려웠다.
- 또한 지방 4급의 경우 평균 연령이 55세로, 3급 승진시 필요한 최저연수(5년)를 경과하면 퇴직이 임박하여
 - 공무원 개인으로서는 승진을 기대하며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업무 추진을 하려는 유인이 떨어지고,
 - 지방자치단체 조직 차원에서는 3급 승진요건 충족 자가 적어 인사운영의 어려움이 발생하는 등 문제점이 지적되어 왔다.

◇ 행정안전부는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고, 우수하고 능력 있는 9급 등 하위직 출신 공무원이 보다 빨리 상위 계급으로 승진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기 위해 승진소요 최저연수를 다음과 같이 대폭 단축했다.

【지방공무원 법령상 승진소요최저연수 개선안】

구 분	계	3급←4급	4급←5급	5급←6급	6급←7급	7급←8급	8급←9급
현행	22년	5년	5년	4년	3년	3년	2년
개선	16년(-6)	3년(-2)	4년(-1)	3.5년(-0.5)	2년(-1)	2년(-1)	1.5년(-0.5)

⇒ 3급 이상 승진소요연수는 기존 3년에서 2년으로 1년 단축

※ 국가직공무원의 경우에는 지난달 승진소요최저연수 단축방안을 마련하여 입법예고(2.13~3.5)를 마치고 3.13 현재 법제처 심사 중임

<국가직공무원 승진소요최저연수 단축방안>

구 분	계	3급←4급	4급←5급	5급←6급	6급←7급	7급←8급	8급←9급
현 행	22년	5년	5년	4년	3년	3년	2년
개선안	16년	3년	4년	3.5년	2년	2년	1.5년

◇ 이번 지방공무원 임용령 개정에 따라, 빠르면 올해 상반기 승진 인사부터 변경된 기준이 적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 박동훈 지방행정국장은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9급 등 하위직 출신 공무원도 열심히 일하면 고위 공무원이 될 수 있다는 인식이 공직사회에 퍼져서, 직무에 더욱 매진하는 분위기가 조성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유아동(만5~9세) 인터넷중독률 성인보다 높다

- ◇ 만 5세~9세 아동들의 인터넷 중독률(7.9%)이 만 20세~49세 성인 중독률(6.8%)보다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10세~19세 청소년 중독률은 10.4%였으며, 전체 평균은 7.7%로 나타났다.
- ◇ 정부는 지난해 말 행정안전부와 한국정보화진흥원에서 실시한 “2011년도 인터넷중독 실태조사” 결과와 8개 관계부처 대응책을 공동으로 발표했다.
 - 이번 실태조사는 인터넷 이용자 영역이 확대됨에 따라 조사대상 연령('10년 만9~39세→'11년 만5~49세)과 표본수('10년 7,600명→'11년 1만명)를 확대하여 통계의 대표성을 크게 강화했다.
- ◇ 실태조사 결과, 인터넷중독률은 7.7%(중독자수 2,339천명)로 전년대비 0.3%p 떨어졌으나, 고위험군 중독자는 1.7%로 0.3%p 증가했으며, 이번에 처음 조사한 유아동(만5~9세) 인터넷중독률(7.9%)이 성인(6.8%)보다 높게 나왔다.
 - 청소년 중독률은 전년대비 2%p 낮아진 10.4%로 조사되었다. 그중 고등학생(12.4%)의 중독률이 가장 높았으며, 특히 고위험군은 4.1%로 초·중학생 고위험군(2.1%) 보다 2배 높게 나왔다. 또한 월평균 가구소득 200만원 미만의 저소득층(13.0%)과 다문화가정(14.2%), 한부모가정(10.5%) 청소년의 중독률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 성인 중독률은 6.8%로 전년대비 1.0%p 증가하였으며, 그 중 대학생이 11.0%, 성인 무직자가 10.1% 로 높게 나타났다.
 - 성별 인터넷중독률은 남성(9.1%)이 여성(6.1%) 보다 높았으며, 고위험군에서도 남성(2.2%)이 여성(1.2%) 보다 2배 높았다.

- ◇ 인터넷 주 이용목적은 일반사용자는 뉴스검색(43.0%), 웹서핑(36.2%)인 반면, 인터넷중독자는 온라인게임(41.3%), 웹서핑(37.7%)이었으며, 1일 평균 인터넷 이용시간은 일반사용자는 1.9시간, 중독자는 **2.7시간**으로 조사되었다.
 - 고위험군 중독자의 **9.3%**가 타인 비방 및 허위사실 유포 등의 악성 댓글을 작성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 ◇ 이번에 처음 조사한 스마트폰 이용실태를 보면, 일평균 이용시간은 **3.2시간**이고(전화·문자 등 통화서비스 포함), 주 용도는 '채팅 및 메신저(65.1%)', '뉴스검색(39.3%)' 등으로 나타났다.
 - 스마트폰 중독률은 **8.4%**이며, **10대가 11.4%**로 가장 높았고, 20대가 10.4%로 조사되었다.
 - **SNS** 이용자는 일평균 **3.4회**(52.4분) 이용하며, 이용자의 **10.1%**는 **SNS**를 과다 이용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다.
- ◇ 이번 실태조사 결과에 따른 정책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 전체 중독률은 떨어졌으나, 고위험군이 증가되어 기숙형 치료나 병원치료, 전문후견인제 도입 등 집중적인 대응이 요구된다.
 - 유아동 중독률이 성인 보다 높게 나타남에 따라, 어릴 때부터 조기대응이 필요하며, 가정에서의 부모역할이 더욱 강조된다.
 - 청소년 중독률이 전체적으로 감소했으나, 고등학생(중독률 12.4%)이 매우 높고, 이는 대학생(중독률 11.0%)까지 연결됨을 볼 때, 학교차원의 예방교육과 전문상담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 또한, 성인 중독률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이에 대한 대책이 요구된다.

◇ 정부는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범정부적 대응을 위해, 인터넷 중독단계별로 부처 역할을 분담하여 체계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 이를 위해, 전 연령층으로 확산된 인터넷 중독에 효과적 대응을 위해, 유아·학생·군인·직장인 등 생애주기별 예방교육을 추진 (130만명)하며, 특히 성인 예방교육 강화의 일환으로 60만 모든 장병을 대상으로 특별 예방교육을 실시한다.

※ 유아(3만명), 청소년(60만명), 성인(학부모·직장인 7만명, 군장병 60만명)

○ 고위험군 증가('10년 1.4%→'11년 1.7%)로 가족치유캠프·인터넷레스큐스쿨 등 기숙형 치료와 가정방문상담을 확대하고, 고위험군을 위한 전문후견인제를 도입하여 개인 밀착상담을 지원할 예정이다.

※ 가족치유캠프('11년 115→'12년 480가족), 인터넷레스큐스쿨('11년 150→'12년 600명), 취약계층 가정방문상담('11년 1,000→'12년 1,330가구), 인터넷과 몰입 아동·청소년 치유서비스('11년 1,168→'12년 1,364명)

○ 또한, 179개 협력병원을 연계한 병원치료 뿐만 아니라, 지역거점별 게임과몰입 상담치료센터를 본격적으로 운영한다.

※ 16개 시·도 청소년상담지원센터(청소년전화 1388)를 통한 지역협력병원 연계 및 치료비 지원

- 치료센터 : 수도권(중앙대병원), 호남권(전북대병원), 영남권(부산백병원)

◇ 유아 및 성인 인터넷 중독문제에 효과적인 대처를 위해, 시도 인터넷 중독대응센터 구축을 확대('11년 10개소→'12년 12개소)하고, 센터별 전문상담사 상주인력도 보강할 예정이다.

○ 예방교육과 상담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총 6,078명을 양성하여 인적 인프라를 확충 할 계획이다.

○ 아울러, 인터넷 중독관련 정책홍보를 위해, 범국민 캠페인 전개와 공모전 등을 개최하고, 정책포럼을 구성·운영할 예정이다.

※ 인터넷중독 추방 범국민캠페인(4~11월), 중독예방 동화구연대회(11월), 게임과 몰입 예방 캠페인(연중), 인터넷중독 극복수기 공모전(9월) 등

새로운 지방세 납부시스템, 명칭 선호도 조사 실시

◇ 언제 어디서나 고지서 없이도 지방세를 쉽고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도록 만든 새로운 지방세 납부시스템*을 국민들이 널리 이용할 수 있도록 명칭에 대한 선호도 조사를 실시한다.

* 납세자가 지방세 고지서 없이도 모든 은행 현금입출금기, 인터넷뱅킹 등에서 현금 또는 모든 신용카드로 수수료 없이 쉽게 조회·납부하고, 즉시 납부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 납부시스템으로 향후 각종 공과금까지 확대할 예정임

○ 이를 위해 행안부는 지난 1월 9일부터 1월 31일까지 새로운 지방세 납부시스템의 명칭을 국민 공모를 통해, 총 2,762명으로부터 3,590개의 명칭을 제안 받았다.

○ 이를 홍보 전문가, 대학교수 등으로 구성된 심사위원이 3차에 걸친 심사를 통해 후보 명칭 6개를 선정했다.

- 후보로 선정된 명칭은 “간단e납부, 바로원(Baroone), 바로빌(Barobill), 365공과금, 납부OK, 공과금e납부”이다.

◇ 선호도 조사 기간은 3월 5일부터 3월 23일까지이며, 참여방법은 위택스 홈페이지(www.wetax.go.kr)의 「열린마당 > 선호도 조사」 메뉴를 통해 참여하면 된다.

- 국민 선호도 조사 결과는 3월말에 위택스 홈페이지의 공지사항을 통해 발표될 예정이다.
- 행안부는 적극적인 국민 참여 유도를 위해 선호도가 가장 높게 나온 명칭에 참여한 국민들 중 추첨을 통해 **20명**에게 문화상품권을 지급한다.
- ◇ 김현기 행정안전부 지방세제관은 “이번 조사에서 최종 결정된 명칭을 국민들에게 널리 알려 새로운 지방세 납부시스템에 대한 국민 인지도 및 이용률을 제고함으로써 국민들의 지방세 납부 편의성이 증진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음식점 가격표시 혼선 없앤다

- ◇ 보건복지부(장관 임채민)는 식당 메뉴판에 부가세 등이 포함된 실제 지불가격으로 표시토록 하고, 식당에서 판매하는 고기를 **100g당 가격으로** 표시하는 내용을 담은 「식품위생법 시행령」 및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3월14일부터 4월4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 ◇ 이번 개정안은 메뉴판 표시가격이 실제 지불가격과 상이한데 따른 혼선을 막고, 가격기준을 통일하여 소비자들에게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이다.
- 고급 음식점을 방문해 본 사람이라면 한번쯤은 부가세와 봉사료 때문에 예상보다 더 많은 금액이 적힌 계산서를 보고 당황한 적이 있을 것이다.

○ 복지부가 발표한 바에 따라 음식점, 커피전문점, 제과점 등 식품
 接客업*자가 메뉴판에 가격을 표시할 때 부가세 등을 포함하여
 소비자가 실제 지불해야 하는 가격을 표시하는 것이 의무화 될
 경우 이런 불편한 상황이 사라질 전망이다.

* 식품接客업 : 휴게음식점영업, 일반음식점영업, 단란주점영업, 유흥주점
 영업, 위탁급식영업, 제과점영업

◇ 또한 현재 음식점에서 판매하는 식육에 대하여 중량당 가격
 표시제를 실시하고 있으나, 업소마다 1인분 중량이 서로 달라서
 업소 간 가격 비교가 쉽지 않다는 지적이 있었다.

○ 복지부는 음식점에서 파는 고기의 가격표시 기준 중량을 **100g**
 으로 통일함으로써 소비자들이 손쉬운 가격 비교를 통해 합리
 적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돕는다는 계획이다.

- 다만, 식당에서 고기를 통상 1인분 단위로 판매하는 점을 감안
 하여 **1인분**에 해당하는 중량당 가격을 100g당 가격과 함께 표기
 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 가격표시 예시 >

현		행	개		선	안
삼겹살	1인분 200g	9000원	→	삼겹살	100g 4500원
꽃등심(150g)	33000원	→	꽃등심	1인분 150g 33000원	(22000원/100g)

◇ 이밖에도 이번 개정안은 유전자재조합식품 안전성 평가자료 심사
 위원회를 운영함에 있어서 사적 이해관계로 인해 공정한 심사를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 해당 위원을 심사에서 배제할 수 있도록
 제척·기피 및 회피 제도를 도입하고,

- ◇ 식품위생검사기관으로 지정받은 자가 실수로 유효기간 연장이나 재지정 신청 기한을 놓쳐 피해를 입는 일이 없도록 식약청장이 유효기간 만료 **60일전에 미리 안내**하도록 하는 등의 과제를 담고 있다.
- ◇ 앞으로, 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동안 국민의 다양한 의견 수렴을 거쳐 상반기 중으로 개정을 마무리하고, 하반기에 시행할 계획이다.
- ◇ 「식품위생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4월4일까지 보건복지부 식품정책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w.go.kr/정보마당/법령자료/입법예고)에서 자세한 사항을 살펴볼 수 있다.

노인틀니 건보적용, 전월세는 보험료 부담 줄어

-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으로 노인틀니에 건강보험이 적용(7월 시행)되는 등 보장성은 확대되고, 전월세 상한선 도입(4월시행) 등으로 전월세 가구는 보험료 부담은 줄어든다.
 - 보건복지부(장관 임채민)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개정안이 **2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 ◇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1) 전월세 세대 보험료 부담 완화
 - 보건복지부는 전월세금의 급등에 따라 건강보험료가 상승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12년 4월부터 보험료 산정 평가기준의 전월세금 상승률에 상한선(10%)을 도입하고,

- 인상된 전월세금에 충당하기 위해 부채를 부담한 경우 전월세금에서 부채를 공제하기로 하였다.
- 이와 함께 '12년 9월부터는 전월세 세대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300만원을 공제하여 보험료 부담을 낮추기로 하였다.
- 이를 위해 시행령에서 기존에 건보공단 정관으로 정하던 전월세 보증금 평가 기준을 시행규칙으로 위임하도록 하고 구체적인 평가 기준을 반영한 시행규칙을 함께 개정한다고 밝혔다.
- 이에 따라 전월세 지역가입자 총 336만 세대 중에 전월세 상한선 적용으로 약 28만 세대의 보험료가 평균 월 9천원*이 줄고, 300만원 기초공제로 약 103만 세대의 보험료가 평균 월 4천원**이 줄어,
 - 이를 모두 적용받게 되는 세대는 평균 월 1만3천원의 보험료가 줄어 연간 약 8백74억원 정도의 전월세 세대 보험료 부담이 완화된다.

* 전월세 세대 평균보험료(4만7천원)의 19%, **9.4%

2) 75세이상 노인의 완전틀니 50% 보험적용 실시

- 12년 7월부터는 75세이상 노인의 완전틀니에 건강보험이 적용되어 틀니비용의 50%만 본인이 부담하게 된다.
- 노인틀니 수가는 100만원 이하로 예상되며 이에 따라 약 39만 명의 노인들이 종전의 145만원 정도의 비용에서 1/3수준으로 줄어든 약 50여만원의 비용부담으로 완전틀니를 장착할 수 있게 되어,
 - 저작기능 개선 등으로 노인건강수준 향상이 기대된다.

- 한편 보건복지부는 완전틀니 보험적용에만 3,288억원이 소요되며 부분틀니는 재정부담을 감안하여 **13년부터 단계적으로 확대** 적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3) 임신출산진료비(고운맘카드) 지원금 확대

-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로 **60만여명의 임신부에** 현행 40만원씩 지원되던 임신·출산진료비 지원금(고운맘카드)이 **12년 4월부터는 50만원으로 지원 확대**가 된다.
- 고운맘 카드는 임신·출산과정의 검사, 분만 등에 지출되는 임신부의 진료비 부담 완화를 위해 지급되는 바우처 카드로 **'08년 (20만원) 이후 매년 10만원씩 지원금을 확대하여** 출산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였다.
- 한편 **다태아의 경우** 양수검사 등의 난이도와 시술시간이 일태아에 비해 2배 이상 걸리는 점 등을 고려하여 **7월부터는 20만원을 추가로 지원(70만원)**하기로 하고 관련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바 있다.

4) 의원을 지속적 이용하는 환자의 진찰료 일부 경감

- **12년 4월부터는 고혈압이나 당뇨 환자가 의원에서 외래진료를** 지속적으로 받으면 다음 진료부터 해당 질병의 진찰료 본인 부담률이 감면(**30%→20%**)되어 방문당 **920원***의 경감 혜택을 받게 된다.

* 재진진찰료 본인부담 : 2,760원 → 1,840원

- 이를 통해 **고혈압·당뇨병 환자의 체계적인 질환관리로 국민 건강을 증진하고 1차의료(동네의원)를 활성화시켜** 환자와 국가의 의료비용 절감이 기대된다.

- ◇ 보건복지부는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을 3월 중에 공포하여 차질 없이 시행하고,
-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보험료 부담과 보험재정 사용을 보다 공평하고 효율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기술유출 방지, 전자지문으로 해결

최근 기업들이 자사의 핵심자산인 기술정보 등을 지키기 위한 해결책으로 영업비밀 원본증명서비스에 대한 관심이 높다.

삼성전자 또한 영업비밀 원본증명서비스의 대량 이용계약을 체결하고 서비스를 이용하여 영업비밀을 보호하고 있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현재 보유하고 있는 수만건의 영업비밀에 대한 효과적인 관리뿐만 아니라 향후 발생할 수 있는 기술유출에 전략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영업비밀 원본증명서비스를 이용하게 되었다”라고 밝혔다.

영업비밀 원본증명서비스는 특허청(청장 이수원)이 한국특허정보원과 함께 도입한 것으로, 영업비밀이 담긴 전자문서는 개인이나 기업이 자체적으로 보관하면서 해당 전자문서로부터 추출된 고유의 식별값, 즉 전자지문의 등록을 통해 영업비밀의 보유 사실을 증명해 주는 서비스이다.

그 동안 기술 유출로 인한 분쟁이 발생한 경우 피해 기업은 해당 영업비밀을 언제부터 보유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증명하기가 쉽지 않았다.

이 서비스를 이용하게 되면 영업비밀 보유 사실을 입증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근로자와 해당 영업비밀과의 연관성이 파악되어 전·현직 근로자에 의한 영업비밀 유출이 억제되는 효과가 있고, 유출 시에도 유출된 영업비밀의 특정 등 분쟁해결 자료로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다.

또한, 타 업체와 거래를 시작하기 전에 서비스를 이용하면 거래 과정에서 기술이 유출되는 경우에 자신이 해당 기술의 정당한 보유자임을 손쉽게 입증할 수 있으며, 경쟁 회사의 특허권 취득에 대비하여 특허법상의 선사용권을 입증하는 자료로도 이용될 수 있다.

특히, 원본증명서비스는 영업비밀 실체 자료가 아닌 전자지문만을 등록하여, 등록 및 증명과정에서 영업비밀 유출 우려가 없다는 점에서 기업들로부터 호평을 받고 있다.

영업비밀 원본증명서비스는 한국특허정보원의 서비스 홈페이지 (www.tradesecret.or.kr) 또는 PC 전용 소프트웨어를 통하거나, 대량 이용기업의 경우 기업의 운영시스템과 서비스를 연동하여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다.

특허청 산업재산정책국 이영대 국장은 “미국, 일본 등 해외에서는 1990년대부터 이러한 원본증명서비스가 활발히 운영되고 있다”며 “핵심기술 등 영업비밀 유출로 인한 기업의 피해가 산업계의 큰 이슈가 된 상황에서, 원본증명서비스는 대기업은 물론 보안역량이 취약한 중소기업 등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기술을 지키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특허청은 영업비밀 원본증명서비스의 신뢰성을 높이고, 그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영업비밀 원본증명의 근거 조항을 마련

하기 위한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의 개정을 현재 추진 중이다.

조달청, 스마트 나라장터 서비스 확대

◇ 앞으로 안드로이드 스마트폰 사용자들도 스마트나라장터 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있게 된다.

* 스마트나라장터 : 입찰정보 검색 및 입찰관리, 투찰 등의 입찰업무를 모바일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실시간으로 서비스하는 앱(App)

◇ 조달청(청장 최규연)은 나라장터 입찰정보 검색은 물론 입찰참여 까지도 가능한 '스마트 나라장터 서비스'를 15일 오후부터 안드로이드 스마트폰까지 확대한다고 밝혔다.

* 사용가능 스마트폰 : 갤럭시S2, 갤럭시U, 갤럭시K, 갤럭시노트, 베가레이스 등

○ 종전에는 아이폰(iOS)용 앱만 개발·제공되어, 국내 모바일 OS의 70% 이상을 차지하는 안드로이드 기반 스마트폰 이용자는 스마트 나라장터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었다.

□ 스마트 나라장터를 활용해 입찰공고, 개찰 및 낙찰결과 등 입찰 정보를 물품, 용역, 시설 등 분야별로 분류, 실시간으로 검색할 수 있다.

○ 또 관심분야를 미리 등록해 두면 해당 입찰건이 나라장터에 공고 되는 즉시 스마트폰으로 확인할 수 있다.

○ 이와함께, 미리 중요한 입찰공고 건을 입찰함에 넣어 두면 지정 시간에 스마트폰으로 입찰마감 일시가 임박했다는 것을 알려주는 입찰일정 관리기능도 사용할 수 있다.

- ◇ 안드로이드 스마트폰으로 확대 서비스 되는 스마트 나라장터는 공모절차를 통해 선정된 KT에서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해 제공한다.
- 스마트 나라장터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이동통신사(KT)에 스마트 나라장터 부가서비스 이용 신청을 한 후 조달청 본청(대전)이나 가까운 지방조달청을 방문, 보안토큰에 지문과 공인인증서를 등록하면 된다.
- 부가서비스를 신청하지 않는 사용자도 투찰기능을 제외한 모든 기능을 가입한 이동통신사와 무관하게 서비스 받을 수 있다.
- ◇ 조달청 김윤길 정보관리과장은 "앞으로 조달업체뿐만 아니라 수요기관에서도 언제, 어디서나 나라장터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스마트폰을 이용한 전자조달서비스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무당벌레, 뒤영벌, 굼벵이도 이제 당당한 생명자원

- ◇ 지금까지 지역행사나 학습·애완용 등에 제한적으로 활용되던 곤충 자원의 산업화가 본격 추진된다.
- 농림수산식품부는 시장규모와 활용 면에서 앞으로 급속한 성장이 예상(2009년 1,570억 원→2015년 3,000억 원)되는 곤충산업을 생명산업과 바이오산업 등으로 본격 육성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 * 주요 정책 : ①곤충자원 조사 및 유용곤충의 발굴 ②곤충자원의 상품화 R&D 강화 ③곤충농가 및 곤충산업체 육성 ④전문인력 양성 및 교육 강화 ⑤제도개선 및 산학관연 발전협의체 구성

- * 곤충산업분야 예산('12)
 - 총 5,020백만원(농식품부 1,520/ 농진청 3,200/ 산림청 300)
- * 곤충자원의 식·약용 소재화를 위한 약리성 및 독성 평가('12~'14, 13억원)

◇ 금년 중 전면적인 곤충산업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농가·업체와 정부가 효과적으로 소통할 수 있는 곤충산업발전협의체도 운영함으로써, 2012년을 곤충자원의 고부가가치 산업화와 곤충을 통한 새로운 농가 소득원 확보 기반을 구축하는 한 해로 만들어낼 계획이다.

- * 곤충산업종사자 신고현황('11) : 총 568개소(곤충농가(310), 유통업체(255), 기타(3))

◇ 특히, 고부가 가치를 창출하는 바이오소재 산업, 콘텐츠 산업, 융복합 산업 등으로 곤충산업의 영역 확장에 전초 기지 역할을 수행할 지역곤충자원산업화지원센터가 출범하게 된다.

- 천적, 화분매개, 식·의약·사료 소재 곤충분야로 3개소의 센터를 특화시켜 농가에게 곤충 사육기술을 보급·교육하는 한편 다양한 곤충자원을 개발하는 등 산·학·관·연이 센터를 중심으로 함께 곤충자원의 산업화에 구심체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 천적분야는 경기도, 화분매개용 분야는 경상북도, 식·의약·사료용 소재분야는 경상남도가 중심이 되어 전국 농가·업체를 대상으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 * 천적(경기도) : 도시근교라는 유리한 입지를 강점으로 천적이용기술 및 매뉴얼 보급, 천적품질인증제 등 국내 최고의 천적산업 메카 조성을 목표
- * 화분매개(경북도) : 최대 화분매개 곤충의 생산지, 산학연관 인프라 등을 기반으로 곤충산업 비즈니스 모델을 개발하여 보급

* 식·의약·사료 소재(경남도) : 관련농가의 활발한 활동을 기반으로 곤충 자원을 활용한 축산, 양계 경영모델을 구축하여 곤충산업 시장 확대에 기여

◇ 농림수산물식품부 관계자는 향후 센터의 실적과 지원성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예산 당국과의 협의를 거쳐 특화분야와 대상지역 등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며,

○ “곤충산업 육성을 위한 법적·제도적 여건마련에 이어 지역 곤충자원산업화지원센터 건립 사업은 곤충산업이 명실상부한 고부가 신성장 동력산업으로 발돋움할 수 있는 기폭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참고

곤충산업 시장규모 및 지역곤충자원산업화지원센터 사업

□ 시장규모 : 약 **1,570**억원으로 추정('09), '15년도에 2,980억원 추정

< 국내 곤충산업 시장규모 (2009) >

활 용 분 야	대상곤충종류	시장규모(억원)	
		'09	'15추정
학습·애완곤충	장수풍뎅이, 사슴벌레, 꽃무지 등 50여종	400	540
화분매개곤충	뒤영벌, 가위벌, 꿀벌	540	880
천 적 곤 충	무당벌레, 진디혹파리, 칠레이리응애 등 34종	230	300
지역행사곤충	나비류, 반딧불이 등	400	560
사료용, 의약용	동애등애, 풍뎅이유충, 거미, 거머리 등	-	700
합 계		1,570	2,980

* 자료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한국양봉협회(꿀벌 화분매개 시장규모, 2010)

□ 「지역곤충지원산업화지원센터」 주요사업

특화 분야	선정지자체	사 업 내 용
화분매개	경상북도	· 화분매개 곤충의 연구개발과 기술지원 · 곤충질병의 예방 및 특성화 검증 · 곤충산업 비즈니스 모델개발 보급
천 적	경기도	· 천적이용기술 교육 및 매뉴얼 보급 · 천적상품 마케팅 및 수출지원 · 천적 곤충종자은행 운영
식·의약· 사료용 소재	경상남도	· 곤충 대량사육체제 구축 · 식·사료용 소재 곤충지원의 제품화 공정개발 · 업계와 협력하여 R&D과제 수행으로 제품개발 활성화

전통시장 사용 현금영수증 등 소득공제 확대

◇ '12.2월부터 전통시장에서 사용한 현금영수증 등에 대하여 소득 공제가 확대¹⁾됨에 따라

○ 전통시장에서 현금이나 은누리상품권²⁾등으로 물품을 구매한 소비자의 현금영수증 발급요구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

- 1) 전통시장에서 현금영수증·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이 총급여액의 25%초과하는 경우 초과금액의 20% 소득공제 → **30% 소득공제**

2) 전통시장에서 사용가능한 상품권으로 '11년 발행금액 2,350억원 (중기청, 시장경영진흥원 발행)

□ 기존에는 현금영수증을 신용카드 단말기나 인터넷 PC로만 발급 하였으나 '12.3.12.부터는 일반 전화기로도 발급할 수 있도록 ARS시스템 개통

- 신용카드 단말기가 없는 사업자도 손쉽게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어 전통시장 활성화와 소비자 불편사항이 크게 해소될 것으로 기대
- ◇ 현금영수증을 전화기로 발급하기 위해서
 - 국번 없이 126번에 접속하여 안내에 따라 거래내역을 입력하면 거래내역이 국세청으로 전송되고
 - 구매자에게는 거래내역이 즉시 문자로 전송됨
- ◇ 또한, 전화기로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는 사업자는 별도의 가입절차 없이 현금영수증 가맹점에 가입되며
 - 현금영수증을 발급한 가맹점은 부가가치세 신고 시 발행 세액공제*와 소득세 신고 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음
 - * 발행금액의 1.3%(간이 2.6%), 연간 700만원 한도
 - * 5천원 미만의 현금영수증 발급 시 건당 20원

선거관련정보

공무원 등의 선거개입금지

공무원 선거 개입 금지의 필요성

1.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은 강하게 요구됩니다.

○ 공무원의 정치활동은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가. 「헌법」 제7조 제2항은 “공무원의 신분과 정치적 중립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는 법률인 「국가공무원법」 (§65) 및 「지방공무원법」 (§57)에서는 공무원의 정치활동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나. 나아가 「공직선거법」은 “공무원은 선거에 대한 부당한 영향력 행사 기타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9①)”고 규정하여 ‘선거에서의 공무원의 중립의무’를 구체화하고 있습니다.

○ 공무원 등의 선거개입 금지는 선거의 공정성을 위한 것입니다.

가. 「공직선거법」에서 공무원 등의 선거운동을 금지하는 이유는, 그들이 그 직을 그대로 유지한 채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 자신들의 지위와 권한을 특정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에 남용할 소지가 높기 때문입니다.

나. 또한,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일정한 행위도 금지하고 있는 바, 이는 직무를 통하여 얻은 여러 가지 정보를 선거에 활용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자신의 부하직원을 선거운동에 동원할 염려도 있으며, 선거운동에 유리한 방향으로 직무를 편파적으로 집행하거나 법규를 적용할 가능성도 있으므로 공무원 등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특수한 지위에 있는 자가 선거 결과에 불공정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금지되는 주체와 행위

1. 선거개입을 할 수 없는 사람의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 정치활동이 허용되는 공무원도 정치적 중립의무가 있습니다.

가.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을 규정한 「공직선거법」(이하 생략) 제9조의 ‘공무원’이란 원칙적으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모든 공무원입니다. 즉, 좁은 의미의 직업공무원은 물론이고, 적극적인 정치활동을 통하여 국가에 봉사하는 정치적 공무원(예컨대, 대통령, 국무총리, 국무위원, 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등 지방 자치단체의 장)을 포함합니다.

나. 특히 직무의 기능이나 영향력을 이용하여 선거에서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형성과정에 영향을 미치고 정당간의 경쟁관계를 왜곡할 가능성은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집행기관에서 더욱 크므로, 고위행정관료나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에게 다른 공무원보다도 선거에서의 정치적 중립성이 특히 요구됩니다.

다. 특히, 재외선거 도입으로 예상되는 재외공관에서의 정치적 중립성 논란을 일소하기 위하여 외교통상부와 협의하여 선거 중립성 확보를 위한 지침을 각 재외공관에 시달하였습니다. 이 지침에 따르면 재외공관은 국회의원 및 개별 정당이 동포 간담회 개최 추진시 일정을 주선하는 등의 행위를 금지하고

있고 재외공관원은 개별 국회의원 또는 개별 정당 등이 주도하는 정치적 행사 및 모임에 참석할 수 없습니다.

2. 공무원은 선거운동 뿐만 아니라 선거관련행위도 할 수 없습니다.

○ 공무원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습니다.

가.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고(§60①),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공무원은 당내경선운동도 할 수 없습니다(§57의6①).

나. 나아가 공무원이 그 영향력을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경우 일반인이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보다 선거의 공정과 자유를 크게 저해하므로, 공무원이 ‘그 지위를 이용하여’ 당내경선운동과 선거운동을 할 수 없습니다(§57의6②, §85①).

○ 공무원은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도 할 수 없습니다.

가. 공무원이 할 수 없는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는 다음과 같습니다(§86①).

1. 소속직원 또는 선거구민에게 교육 기타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의 업적을 홍보하는 행위
2.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의 기획에 참여하거나 그 기획의 실시에 관여하는 행위
3. 정당 또는 후보자에 대한 선거권자의 지지도를 조사하거나 이를 발표하는 행위
4. 선거기간 중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으로 시행하는 사업중 즉시 공사를 진행하지 아니할 사업의 기공식을 거행하는 행위
5. 선거기간 중 정상적 업무외의 출장을 하는 행위
6. 선거기간 중 휴가기간에 그 업무와 관련된 기관이나 시설을 방문하는 행위

○ 공적 지위에 있는 사람도 선거운동 및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가. 다음과 같이 공공성이 강한 직위에 있는 사람은 선거운동뿐만 아니라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도 할 수 없습니다.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 기관 중 정부가 100분의 5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기관 (한국은행 포함)의 상근 임·직원
- 농협, 수협, 산림조합, 협연초 생산조합의 상근 임·직원 및 이들 조합의 중앙회장
-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 임·직원
- 통·리·반의 장, 주민자치위원회 위원과 향토예비군 중대장급 이상의 간부
-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새마을운동협의회·한국자유총연맹의 상근 임·직원 및 이들 단체 등(시·도 및 구·시·군 조직 포함)의 대표자 등

처벌과 포상

1. 선거운동에 불법적으로 개입한 공무원 등은 불이익을 당합니다.

○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으면 퇴직됩니다.

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징역형이나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을 경우 공무원, 교수, 사립학교 교원, 공공기관의 임·직원 등의 공직에 일정기간 동안 취임할 수 없습니다. 이 기간에는 선거권이 없어 투표할 수도 없습니다.

나. 이미 위의 공직에 취임·임용된 사람은 ‘퇴직(退職)’됩니다(\$266).

다. 공무담임 제한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징역형의 선고를 받은 자는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또는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후 10년간
- 형의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자는 그 형이 확정된 후 10년간
- 100만원 이상의 벌금에 처해질 경우 형 확정 후 5년간

○ 이 외에도 선거개입 공무원에 대해서는 다음의 불이익이 있습니다.

- 공무원의 선거범죄에 대해서는 일반인의 경우보다 엄격한 처벌 기준 적용
- 소속 기관의 장 및 상급 행정기관의 장에게 위반사실 통보 및 징계요구
- 감사원에 감사자료 통보 등

2. 신고·제보자에게는 포상금이 지급되고 신분을 보장해 드립니다.

○ 공무원의 줄서기 등 선거관련 행위는 우리위원회가 중점 단속하는 중대선거범죄 중의 하나로 이를 신고·제보하는 분께는 최대 5억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고 철저한 신분보호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신고·제보자가 공무원인 경우 신분상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통리·반장 등 관련 주요 조치사례

1. 음식물 제공

- ○○군청 소속 이장은 2011.10.19 ◇◇면 □□식당에 선거구민 10명을 모아놓고 입후보예정자를 초청하여 선거운동을 하게하고 참석자 들에게 90천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함. (2012. 2. 1. 고발)

2. 유사기관 사조직 설치·운영

- 예비후보자 및 지방자치단체장이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을 위하여 전직 동장과 통장, 부녀회장들로 구성된 비상대책위원회라는 사조직을 설치하고 경선선거인 대리등록 및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을 조직적으로 함.
 - ⇒ 예비후보자 및 지방자치단체장 수사의뢰(2. 27),
 - ⇒ 지방의원 고발(3. 2)
 - ⇒ 검찰 조사중 위법의 혐의가 있는 통장 등 4명 구속(2012. 3. 5)

3.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시설물 게시

- ○○군청 소속 통장은 2012. 1. 10. □□읍 ◇◇리 육교위에 국회의원의 업적을 홍보하는 현수막을 게시함. (2012. 1. 13. 경고)
- ○○군청 소속 이장은 2011. 1. 29. 국회의원의 장관취임에 따른 축하 현수막을 도로변에 게시함 (2012. 2. 23. 경고)

4.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인쇄물 첩부

- ○○구청 소속 통장은 2012년 1월 초순경 백내장무료 수술에 관한 사업을 주민들에게 안내·홍보하면서 예비후보자 명의를 나타낸 공고문을 아파트 단지내 35개소에 첩부함. (2012. 2. 3. 경고)

5. 기타 주요조치사례

- 이장이 자신의 취임식에서 취임사를 하며 국회의원 입후보예정자를 지지·호소하는 발언을 함.
⇒ 2008. 1. 29 고발, 벌금 100만원(2008. 10. 17)
- 이장이 주민의 의사와 무관하게 20여명의 부재자신고를 작성하여 제출함.
⇒ 2010. 5. 25 고발, 징역8월 집행유예 2년(2010. 09. 09)
- 주민자치위원이 선거구민에게 예비후보자의 자서전 18권을 무료로 제공함.
⇒ 2010. 4. 23 고발, 벌금 200만원(2010. 10. 11)
- ○○면 이장단협의회장이 국회의원 의정보고회에 참석하는 마을 주민들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함.
⇒ 2012. 2. 3 고발

개정된 정치관계법 주요내용

- ◇ 선거일을 제외하고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선거운동이 언제든지 가능합니다.
 -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는 누구든지 선거일이 아닌 때에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그 대화방 등에 글이나 동영상 등을 게시하거나 전자우편·문자메시지 전송에 의한 선거운동이 가능합니다.
 - 다만, 선거일에는 현행과 같이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선거운동을 금지하되, 특정 정당·후보자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없이 단순히 투표권유 행위를 하는 것은 가능합니다(공직선거법(이하 ‘법’이라 함) 제58조제1항)
 - 또한, 국회의원·지방의원이 의정활동보고를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그 게시판·대화방 등에 게시하는 것 뿐만 아니라 전자우편·문자메시지로 전송하는 것은 언제든지 가능합니다.(법 제111조제1항)
- ◇ 인터넷을 이용한 비방·흑색선전에 대한 제재가 강화됩니다.
 - 우리위원회 뿐만 아니라 후보자도 인터넷 언론사에 대하여 위법 인터넷 게시물에 대한 삭제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법 제82조의4 제3항).
 - 선거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동영상 등을 인터넷에 게시하거나 전자우편·문자메시지로 전송하게 하고 대가를 제공하는 경우 매수죄에 해당되어 5년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그 대가를 제공받은 사람에게는 10배 이상 50배 이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법 제230조제1항, 법 제261조제6항).

◇ 선거와 관련한 여론조사의 신뢰성을 강화하기 위한 장치를 마련 하였습니다.

-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결과를 왜곡하여 공표· 보도하는 행위는 할 수 없습니다(법 제96조제1항).
- 언론기관이 여론조사결과 등과 같은 객관적 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하고 선거결과를 예측하여 보도하는 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법 제96조제2항).
- 공표· 보도 여부와 관계없이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하는 경우 조사기관·단체의 명칭,주소 또는 전화번호와 조사자의 신분을 밝혀야 하고, 여론조사결과를 공표· 보도하는 경우 성별·연령별 표본의 크기 및 조사된 성별·연령별 표본 크기의 오차를 보정한 방법 등을 함께 공표· 보도해야 합니다 (법 제108조제4·5항).
- 여론조사결과를 공표· 보도한 경우 해당 여론조사를 실시한 기관·단체는 조사의 신뢰성·객관성의 입증에 필요한 자료를 자신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합니다(법 제108조제6항).
- 선거구위원회는 여론조사결과의 객관성·신뢰성에 대해 정당·후보자로부터 이의제기가 있거나 선거법을 위반하였다고 인정 될 경우 해당 여론조사와 관련된 자료일체를 제출할 것을 요구 할 수 있습니다(법 제108조제7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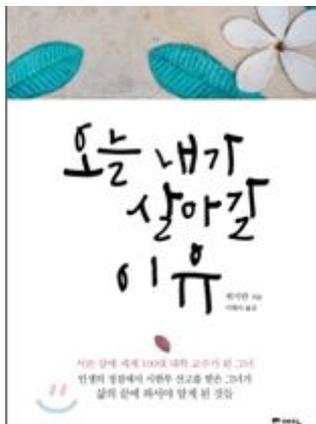
◇ 재외선거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을 신설하였습니다.

- 국외에서 장기 3년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선거범죄를 범한 혐의를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으나 선관위의 조사에

불응하거나 기소중지 된 자 등에 대해 5년의 범위 안에서 여권 발급 등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법 제218조의30),

- 공직선거법을 위반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외국인의 경우 당선인의 임기 동안 국내 입국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법 제218조의31).
- 또한, 영사는 법원 또는 검사의 의뢰를 받아 대한민국 재외공관 등에서 선거범죄 피의자 등의 진술을 청취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법 제218조의32),
- 검사나 사법경찰관은 재외공관에 출석한 선거범죄의 피의자 등을 상대로 인터넷 화상장치를 이용하여 진술을 청취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법 제218조의33).

행복한 책 읽기



- 도서명 : 오늘 내가 살아갈 이유
- 저자명 : 위지안
- 출판사 : 예담
- 출판년 : 2011.12.20
- 페이지 : 312쪽
- 가 격 : 12,900원

2011년 4월 19일 중국 각계각층의 인사들이 한 여성의 추모식에 줄을 이어 참석했다. 언론은 그녀의 사망 소식을 앞 다투어 보도했고, 온라인에서도 애도의 물결이 이어졌다.

인기 연예인도, 유명 인사도 아닌 한 여성의 죽음에 14억 중국인이 눈물을 흘린 이유는 무엇일까? 그것은 단순한 슬픔의 표시가 아니라 그녀가 남기고 간 큰 가르침에 대한 감사의 표현이었다.

“뭔가를 이루기 위해 전속력으로 달리는 것보다, 곁에 있는 이의 손을 한 번 더 잡아보는 것이 훨씬 값진 일이라는 것을 알았다.”

“운명은 내 맘대로 바꿀 수 없지만 운명에 대한 나의 자세는 얼마든지 바꿀 수 있으니까.”

“사랑은 나중에 하는 게 아니라 지금 하는 것이었다. 살아 있는 지금 이 순간에.”

“우리는 가족과 친구, 소중한 이웃들에게 어떤 형태로든 사랑의 빛을 지며 살고 있다. 그러니까 행복한 것은, 언젠가 갚아야 할 빛이다.”

그녀는 자신의 블로그에 평범하지만 긴 울림을 주는 글을 올리며 네티즌의 주목을 받았다. 글마다 10만 회 이상 조회, 수백여 건의 댓글이 달릴 정도로 화제가 된 이 블로그를 접한 사람들은 돈과 권력을 위해 내달리던 자신을 되돌아보고 반성하다 곧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었다.

이유는 글을 올린 그녀가 암 말기 판정을 받고 죽음을 목전에 둔 30세, 젊은 여교수였기 때문이다. 세계 100대 대학 중 하나인 푸단대학 젊은 교수 위지안은 인생의 정점에 막 올라선 순간 삶을 접어야 할 안타까운 상황이었다.

암 말기... 그러나 뼈가 산산이 부서지는 고통 속에서도 병으로 인해 행복을 더 쉽게 느낄 수 있다고 말하며, 삶의 끝에 서 있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이야기를 담담하게 때로는 위트 있게 블로그에 써내려갔다.

그 글에 어떤 이는 위로를 받았고, 어떤 이는 인생을 바라보는 새로운 시각을 갖게 되었고, 어떤 이는 다시 꿈을 꾸게 되었다.

TV나 책을 통해 병이나 사고로 투병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접할 때, 우리는 잔망스럽게도 그들의 불행을 통해 '나는 저 사람보단 낫지'라고 위안을 받거나, 그들의 비극에 눈물 흘리며 삶이 허무하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

그러나 위지안이 남아 있는 사람들에게 남기고 싶었던 것은 단순한 위로나 눈물이 아니었다. 그녀는 삶의 끝에 서서 자신이 알게 된 것, 즉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떠나려고 한 것이다.

돈과 명예, 권력보다 삶을 대하는 긍정성과 희망, 자신의 일에 대한 소명, 가족에 대한 사랑, 건강, 살아 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아름다운 인생 등이 바로 그것이다.

자신의 글을 통해 단 한 명이라도 변할 수 있다면, 자신이 누군가의 희망이 될 수 있다면, 마지막까지 할 일이 있다는 것을 기쁘게 받아들이겠다는 말에 우리는 귀 기울여야 한다.

□ 저자소개

《 위지안 》

- 1979년 생. 상하이 자오퉁대학교를 졸업
- 노르웨이 오슬로대학교에 유학
- 상하이 푸단대학교에서 교수로 재직
 - 어린 시절에는 주로 남자 아이들과 어울려 놀며 ‘꼬마 깡패’로 악명이 높았다. 한편으로는 소문난 독서광이었으며, 지는 것을 싫어해 공부에서든 놀기 또는 먹기에서든 항상 또래보다 우수한 성적을 거두곤 했다.
 - 환경경제를 공부하기 위해 노르웨이에 유학을 갔다가, 이른바 ‘노르웨이 숲’에 온통 마음을 빼앗겨 ‘숲에 미래가 있다’는 비전을 세운 채 중국으로 돌아와 교수가 되었다. 숲에서 화석 연료를 대체할 에너지를 생산하는 ‘에너지 숲 프로젝트’를 정부에 제안하는 등 다양한 활동을 벌이던 2009년 10월, 갑작스럽게 말기 암 판정을 받았다.
 - 이륙 준비를 마친 우주선이 카운트다운 직전에 어이없이 폭발해버린 것처럼, 그녀의 삶은 절정의 순간에서 곧바로 나락으로 떨어져 버렸다.

- 그러나 곧 좌절과 분노를 딛고 일어나 ‘앞으로 남겨진 시간들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고민했다. 그리고 자신의 과거와 현재를 돌아보며 깨달은 것들을 일상의 에피소드와 함께 블로그에 연재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자기 앞에 남겨진 삶이 길지 않을 것이란 사실을 알고 있었다.
- 그러나 뼈가 부서지는 고통 속에서도 희망을 지켜냈으며, 낙천적인 태도로 인생의 참다운 가치와 소박한 행복을 이야기했다. 그녀의 글을 통해 많은 사람들이 위로를 받았고, 인생을 바라보는 새로운 지혜를 배웠다. 새로운 도전을 꿈꾸게 된 사람도 많았다. 삶의 끝에 이른 그녀가, 살아갈 날이 여전히 많은 사람들에게 위안과 희망을 준 셈이다.
- 위지안은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에게 ‘오늘 내가 살아갈 이유’를 일깨워주고는 2011년 4월 19일 새벽 세 시에 세상을 떠났다. 그녀는 이 세상을 떠났지만, 그녀의 영혼은 많은 사람들의 마음에 남아 영원히 빛나는 별이 되었다.

